

▶特輯－壬午軍亂 110周年紀念, 壬午軍亂을 해부한다

## 壬午軍亂은 軍亂인가 政變인가

金 鎬 逸

(中央大 史學科 教授)

### I

1882년 7월 19일(高宗19년 음6월 5일) 朝鮮王朝에서는 武衛營 소속舊訓練都監군인들에 의한 都捧所事件을 계기로 壬午軍亂이라는 정치적변혁이 일어났다. 이 난은 조선왕조자체의 기틀을 흔들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清國·日本의 조선에 대한 力學關係에 변화를 가져오게 했으며歐美列强에게도 관심을 갖게 한 國際的인 사건이었다.

현재까지 이 난의 명칭을 ‘壬午軍亂’(李基白; 新修版『韓國史新論』 등), ‘壬午軍變’(國史編纂委員會; 『한국사』16), ‘壬午事變’(金正明編; 『日韓外交資料集成』), ‘壬午軍卒之亂’(朴殷植; 『韓國痛史』), ‘壬午軍人暴動’(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통사』(하)), ‘1882년 군인봉기’(한국역사연구회; 『한국역사』), ‘壬午軍亂·壬午兵變’(田保橋潔; 『近

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제도개혁으로 대우가 나빠진 구식군인들과 도시빈민 층에서도 일어났으니 임오군란(1882)이 그것이다”(姜萬吉;『韓國近代史』)

“……大院君의 이러한 煽動教唆에 제일먼저 월기한 것이 불원간에 도태 될 운명에 있었던 舊式軍隊들이었다. 그들은 政府當局의 奉給不渡와 不正給與를 구실로 하여 武器를 들고 閔氏政權打倒와 排日鬪爭에 봉기했던 것이다”(白鍾基;『韓國近代史研究』)

다음 임오군변으로 서술된 개설서는 국사편찬위원회편 『한국사』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高宗 19년(1882) 6월 9일에 朝鮮에서 일어난 壬午軍變은 이른바 都捧所事件이라고 불리우는 訓局兵들에게 봉급을 주는 軍料의 분쟁에서 발단한 돌발사건이었다. 그러나 高宗 친정 이후 정치세력을 거세당한 大院君이 이 軍變을 이용하여 다시 집권함으로써 政變으로 발전하였다.”

“……요컨대 壬午軍變은 閔氏政權이 추진한 성급하고도 무분별한 개화정책에 대한 반발과 정치, 경제, 사회적인 모순을 배경으로 하여 일어난 軍民의 저항이었으며 朝鮮王朝의 근대화과정에 있어서의 중요한 한 시련이었다고 할 수 있다.”(權錫奉;『壬午軍變』, 『한국사』16 근대 개화척사운동 소수)

한편 폭동, 봉기의 성격으로 규정한 개설서의 서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에 구식군인 및 그 가족들은 민씨정권의 타도와 일본세력의 퇴치를 위해 폭동을 일으켰다. 여기에 왕십리 이태원일대의 빈민들도 가세하였다……임오군란의 경우도 도시빈민출신의 군인들에게 쌀배급이 지연되자 그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여 일으킨 도시빈민폭동의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민씨일파의 봉건적인 수탈과 일본세력의 침입에 반대하는 이들의 자연발생적인 폭동은 자신들의 요구를 대변하고 해결해줄 적당한 정치세력을 찾지 못한 채 대원군의 재등장을 물고오는데 그쳤다.”(한국민중사연구회편;『한국

代日鮮關係の研究), ‘壬午政變’(旗田巍:『朝鮮史』), ‘大院君의 亂’(林泰輔:『朝鮮通史』全)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즉 한국사개설서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용어가 壬午軍亂이고 그밖에 壬午軍變, 壬午軍人暴動, 壬午政變이라고 할 수 있다.

임오군란의 군란이란 군사들이 일으키는 난이라는 뜻으로 軍擾·兵變·軍變이라고도 하여 軍事集團에 의한 武裝叛亂을 의미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서술한 한국사개설서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이같이 개화파 수구의 두 세력을 대원군과 민비의 대립과 얹혀서 정계에 혼란을 빚어내게 되었다. 계다가 일본세력의 침투에 대한 민족적 반항심이 이에 작용하였다. 이 결과 폭발한 것이 고종 19년(1882)의 壬午軍亂이었다.”(李基白; 新修版『韓國史新論』)

“…… 開化와 保守의 대립은 開化派인 閔氏세력과 守舊派인 大院君사이의 정치적 싸움이 얹혀 斥邪論을 바탕으로 한 開化反對運動이 일어났으니 그것이 곧 壬午軍亂이었다. 정부의 급격한 개화정책과 그에 따른 일본세력의 침투에 대하여 국민들의 반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軍制改革으로 천대를 받게 된 구식군인들의 불만이 폭발하였던 것이다.”(高宗 19년, 1882) (邊太燮: 改訂版『韓國史通論』)

“…… 그러나 閔妃중심의 外戚世道아래 人事와 財政이 極度로 紊亂해진 版局이요, 保守勢力의 不平不滿도 增大된 것이 事實이므로, 이러한 改革과 文物의 輸入을 現實에서 達成·推進하기에는 오히려 時機尚早인 感도 없지 않았다. 이에 무서운 反撥이 오래 延久된 軍隊의 叛亂形態로 爆發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곧 壬午軍亂이요……”(震檀學會, 李瑄根;『韓國史』最近世篇)

“大院君은 마침내 다시 한번 정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그것은 高宗19년 6월(1882년 7월) 舊式軍隊의 叛亂에 의해였다.”(李光麟;『韓國史講座』Ⅴ近代篇)

“…… 민씨 정권의 문호개방과 개화정책에 대한 반발은 보수유생층에게서

### 민중사』(근현대편 Ⅱ))

“1882년에는 구식군인들이 중심이 되어 폭동이 일어났다. 직접 동기는 군인들이 제때에 정해진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이다. 이들은 정부로부터 급료를 받는 군인으로 주로 이태원과 왕십리지역에 살고 있는 도시빈민들이었다.”

“임오군인폭동은 폭동군인들의 사상의 미숙함과 대원군에 대한 그릇된 기대, 청의 침략성을 깨닫지 못한 대원군의 미흡한 정세파악, 침략자에 의존하는 민씨일당의 반민족성, 청과 일본의 침략책동 등으로 인해 실패하였다. 그러나 이 폭동은 민씨정권과 일본침략자들에게 엄청난 타격을 주었다. 그리고 개항이후 끊임없이 벌어진 반침략투쟁이 전민중속으로 확대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구로역사연구소 : 개정판『바로보는 우리역사』2)

“근대화정책에 대한 민중의 반발은 1882년 군인봉기로 폭발했다. 대개 도시빈민이었던 구식군대의 하급군인들은 급료지불의 부당성과 신식군대와의 차별대우에 항의하여 왕궁과 일본공사관을 습격하였으며 이최옹, 민겸호 등 척족세력을 처단하고 개화관료들을 공격하였다. 여기에는 개항후 곡물가격의 등귀로 인해 더욱 곤궁한 생활을 하게된 서울의 빈민들도 상당수 참여하였다.”(한국역사연구회 :『한국역사』)

마지막으로 임오정변으로 서술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이當時 朝鮮에는近代的改革을 實行할만한 社會的 地盤도 없었고 이것을 強力하게 育成시킬만한 指導層도 없었다. 그러므로 改革의前途는 不安하였으며 大院君一派의 反擊도豫想되었는 바 과연 兵制改革에 따른 兵士의 暴動으로서 政變이 일어났다”(旗田巍 :『朝鮮史』)

이상에서 살펴보면 軍亂, 暴動, 政變이 다소간의 차이가 있으나 조작되지 않고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권력층 또는 지배층에 대한 집단적인 폭력의 행사이인 暴動에서 시작하여 武力투쟁으로 발전하고 다시 정

치상의 큰 변동인 정권교체로 나타났다는 것을 감안할 때, 1882년 6월 자연발생적으로 군인들에 의하여 일어났던 임오군란도 그 용어의 의미 속에서는 폭동과 무력투쟁, 정변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포괄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Ⅱ

壬午軍亂은 甲申政變, 乙未事變과 함께 19세기 말 조선에서 일어난 중요한 정치적 사건의 하나이면서 후자의 두 사건과 연계된 최초의 사건이다. 이 사건은 개항이후 開化와 斥邪의 이념적 갈등과 정치권 내부의 대립, 즉 閔氏勢力과 大院君勢力의 反目이 자초한 가운데 밖으로는 日本과 清國의 대조선정책이 작용하고 歐美列強과 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한국근대사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것이다.

임오군란이 발발하게 된 동기는 내적 요인과 함께 외적 요인의 작용도 커다. 그것은 일본의 경제적 침투에 의한 결과로 나타났다. 1876년 丙子修好條約을 체결케 하여 조선을 개항시킨 일본은 釜山, 元山, 仁川의 개항지에서 유리한 입장 즉 無關稅, 日本貨幣의 通用, 治外法權의 특권 등을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수탈을 자행하였다. 그예로 개항전 1875년 대일수입이 59,787원, 대일수출이 68,930원, 합계 128,719 원이던 것이 개항후인 1881년에는 대일수입이 1,944,731원 대일수출이 1,882,659원 합계 3,827,394원으로 증가되었으니 수출에서는 32배, 수입에서는 27배로 늘었던 것이다. 이는 1882년 임오군란때까지 日本이 조선시장을 완전히 독점하고 있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일본이 조선과의 무역거래품목은 주로 공산품을 수출하고 토산품을 수입해갔다. 자본주의경제체제가 완성되지 못한 단계에서 서양의 공산품을 주요수출품목으로 조선에 수출하였으니 한마디로 일본자본주의의

진출이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의 자본주의를 발전시키는 단계에서 자본 축적을 위하여 조선과의 무역을 행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일본이 조선과의 무역을 약탈내지 수탈의 형식을 취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조선에서는 米價가 등귀하고 米穀의 品貴현상이 나타나 농촌은 파탄되고 농민들은 기아에 허덕이게 되어 일본에 대한 적개심과 반항의식이 고조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개항후 국내정국은 개화정책의 추진에 따라 開化派와 衛正斥邪派의 대립이 날카롭게 나타나고 李載先事件 등으로 閔妃對大院君의 암투는 더욱 격화되고 있었다. 이같은 상황아래서 舊式軍隊의 불만이 군란으로 표출되었던 것이다.

임오군란의 원인은 閔氏政權의 國庫濫費와 貪官污吏의 농간, 軍制改革에 다른 舊式軍隊의 不平不滿이 자연발생적인 暴動으로 나타난 것이다.

민비는 國庫를 마치 閔庫로 생각하여 마음대로 탕진하였다. 世子冊封문제로 비밀리에 일본과도 교섭하는 한편 李裕元을 통하여 막대한 뇌물을 清北洋大臣 李鴻章에게도 주었으며 世子가 병약한 것을 낫게 하기 위하여 名山大川에 기도를 드리는데 巨金을 아끼지 않았다. 심지어 金剛山 1萬2千峰에 매봉마다 錢1千兩, 米1石, 布1疋을 바치었으며 궁중안에서 무당, 복술가, 맹인을 불러들여 치성이 끊임날이 없었다. 倡優 金夢龍의 한번 춤에 3千兩를 주었으며 점장이 李裕憲의 점 한번에 비단 100匹, 1萬金을 주었다.

이와함께 정부에서도 개화정책을 추진시켜나가는 과정에서 막대한 재정이 소모되어 국고는 고갈되었고 재정의 결핍은 백성들에 대한 苛斂誅求와 賣官賣職의 성행을 가져왔던 것이다.

개화정책에 따른 제도개혁의 하나로 조선정부는 군제개혁을 단행했다. 1881년 4월 신식군대를 양성하기위하여 別技軍을 창설하였고 동년 12월에는 종래의 5軍營을 武衛·壯禦2營으로 개편했다. 신식군대인 별

기군은 일본의 지원약속과 일본군 소위 堀本禮造가 교관으로 배치되어 일본식 훈련을 습득케하였고 대우도 좋았다. 이에 구5영소속 군인들은 차별대우에 불만을 품고 일본에 대한 거부 감정은 높아만 갔던 것이다.

임오군란의 전개과정은 대체로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제1단계는 都捧所事件, 제2단계는 大院君의 執政, 제3단계는 清·日의 軍事的介入과 閔氏政權의 再執權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제1단계는 1882년 6월 5일(1882년 양력 7월 19일) 宣惠廳都捧所에서 일어났다. 13개월의 祿俸을 받지 못하고 있던 구식군인들에게 祿俸米를 지급한다는 공고에 따라 무위영소속 舊訓鍊都監군인들이 도봉소에 집합하였다. 이에 도봉소에서는 군인들에게 녹봉을 지급하였으나 밀린 13개월분에서 1개월분만 지급하였으며 그것도 쌀에 겨와 모래를 섞었고 물에 젖은 썩은 쌀이었으며 斗量도 절반이 되지 않자 군인들은 급기야 불만을 토로하고 그중 砲手 金春永, 柳卜萬, 鄭義吉, 姜命俊등이 수령을 거부하고 庫直이와 다툼이 있었다.

이 소식을 들은 宣惠廳當上 閔謙鎬는 軍官에게 명하여 김춘영등을 포도청에 구금토록 하였다. 이에 김춘영의 父 金長孫, 유복만의 弟 柳春萬등이 주동이 되어 6월 9일 武衛營大將 李景夏에게 호소하였으나 뜻대로 되지않자 민겸호家로 몰려가 호소하려하였으나 여기서 도봉소 고직이와 다시 말다툼이 일어나고 격분한 이들은 민겸호집을 습격, 폐하였다.

순간적인 행동으로 사태가 어렵게 되자 이들은 大院君에게 호소하게 되었다. 민씨정권에 적대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대원군은 이 기회를 놓칠리가 만무하였다. 그는 구식군인들에게 표면적으로는 무마 해산을 종용하면서 심복부하 許煜을 투입시켜 난동군출을 지휘하도록 하였다.

대원군을 만난뒤의 구식군인들은 먼저 東別營 武器庫를 습격하여 무기를 탈취한 다음 捕盜廳에 난입하여 감금되었던 김춘영등을 구하고 다시 義禁府를 습격, 투옥중인 忠淸儒生 白樂寬을 석방시켰다. 다시

군인들은 西大門밖 京畿監營을 습격, 관찰사 金輔鉉을 찾았으나 그가 없자 武器庫를 파괴, 무기를 탈취한 다음 이곳에서 2대로 나누어 1대는 강화유수 閣台鎬등 척신들의 집을 습격하고 1대는 日本公使館을 습격하였다. 日本公使 花房義質은 공사관에 불을 지른 후 仁川을 거쳐 일본으로 탈출하였다.

다음 날인 6월 10일 군인들은 동별영에 집합하였다. 이때 往十里, 梨泰院거주 주민들도 합세하여 사기가 높아지자 이들은 領敦寧府事 興寅君 李最應家를 습격하여 그를 살해하고 昌德宮敦化門으로 향하였다.

군란이 일어나자 정부에서는 고식적인 대응책으로 일관하다가 난민들이 궁궐을 침입함에 당하여 고종은 모든 정권을 대원군에게 일임하였다. 이 와중에 민비는 구사일생으로 탈출하여 忠州長湖院 閔應植鄉第로 은신하였고 궐내에 있던 민겸호, 김보현은 군민에게 살해되었다.

제2단계는 1882년 6월 10일 난의 수습을 책임맡은 대원군은 난의 진압과 정부개조를 서둘렀다. 우선 고종으로 하여금 自責의 教旨를 내리게 하였으며 군란의 주동자들에 대해서도 그 죄를 불문에 부쳤다. 그러면서 군졸들이 요구하는 군제개혁을 단행, 5군영제를 복설하고 3군부도 복설하였으며 인사정책을 단행, 대원군파와 斥邪勢力を 기용하였다. 이로써 민비정권은 끝나고 大院君정권이 들어섰고 민비의 國喪을 발표, 민비의 재집권을 봉쇄하였다.

제3단계는 대원군에 의하여 난이 수습되고 보수세력이 등장하였지만 청의 군사적 개입으로 대원군은 被囚되고 민씨정권이 재집권하여 일본파의 협상을 체결하게 된다.

조선에 있어서 개항 후 다소 열세에 있었던 청은 종래와 같이 宗屬關係를 견지하고자 기회를 엿보던 중 군란이 일어나자 이를 계기로 대조선적극간섭정책을 실시하였다. 조선에서 군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청에 알려진 것은 1882년 6월 17일 주일청국공사 黎庶昌의 전보를 받고서이다. 이에 署理北洋大臣兼直隸總督인 張樹聲은 天津海關道周馥으로 하여금 마침 領選使로 체제중인 金允植과 問議官 魚允中과

회담하도록 하였다.

김윤식과 어윤중은 난의 소식을 듣고 청이 일본보다 앞서 파병하여 국왕을 보호하고 난의 진압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청은 사태의 실상을 파악하고 일본측의 행동을 감시하기 위하여 우선 군함을 조선에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동년 6월 22일 북양함대 丁汝昌과 道員馬建忠은 3척의 군함으로 천진을 출발, 제물포에 도착하였다. 동월 27일에는 동승했던 어윤중이 花島鎮別將 金弘臣으로부터 대원군이 주모자이고 난을 빨리 진압하여야 한다는 정정을 수집하고 마침 月尾島에 정박해 있던 일본군함으로 外務省書記官 近藤眞鋤의 방문을 받고 난의 전말과 조선의政情을 청취하였다.

그런 후 청은 조선파병을 결정하고 廣東水師提督 吳長慶의 淮軍 6營 3,000名의兵力을 이끌고 朝鮮을 향하도록 하였다.

동년 7월 7일 남양만 馬山浦에 도착한 청군은 조선정부의 接見大官趙寧夏 등과 회담하고 난의 주모자는 대원군이고 대원군을 체포할 계획을 세웠다. 그리하여 7월 13일 오장경 등은 국왕을 알현한 다음 운현궁으로 대원군을 예방하자, 오후에 대원군은 담례로 청군막사를 방문하자 이를 계기로 청군은 대원군을 체포하여 천진으로 호송하였다.

군란을 이용하여 재집권한지 33일만에 대원군은 被囚되어 실각하고 정권은 충주에 피난갔던 민비가 8월 1일 서울에 올라오면서 민씨정권은 청의 비호아래 다시 정권을 차지하게 되었다.

한편 일본도 나가사끼에 도착한 花房公사가 외무경 井上馨에게 군란을 보고하자 일본정부는 긴급각의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방침을 결정하였다.

즉 조선국에게 사죄와 배상요구, 전권위원회 파견, 전권위원회에게 호위를 붙일 것, 외무경이 직접 下關에 출장하여 전권위원회를 지휘할 것, 釜山, 元山의 거류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군함을 파견할 것 등이었다.

그리하여 전권위원회에 임명된 花房公使는 군함 4척, 수송선 3척, 1개대대 병력을 인솔하고 下關을 출발, 6월 29일 제물포에 도착하였

다.

花房은 7월 7일 고종을 알현하고 7개조항의 요구조건을 제시하고 3일안에 회답을 요구하였다. 대원군은 3일기한내에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고 청의 마건충에게 중개교섭을 요청하였으나 7월 13일 대원군 자신이 피수되고 정권이 바뀜에 따라 민씨정권이 협상에 임하여 7월 17일 제물포조약 6개조와 수호조약속약 2개조가 체결되었다.

이 조약들은 일본이 조선정부의 주권을 침탈하는 가혹한 내용이었으며 이후 일본상권확장에 길을 터주는 결과가 되었던 것이다.

결국 임오군란은 부패한 민씨정권에 대한 항쟁이었고 개화정책에 대한 척사파의 반발이었으며 대원군과 민비의 정권투쟁이었고 일본세력 침투에 대한 민족적 반감의 소산이라 할 수 있다.

### III

임오군란은 청국의 군사적 개입을 최대이유로 대원군정권은 몰락하고 민비의 척족세력이 다시 집권하므로써 그 막을 내렸다. 그러나 이 난이 가져다준 영향은 조선국내외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우선 조선정계에서는 대원군 被囚로 인한 재집권의 실패는 斥邪勢力의 몰락을 가져왔다. 민비의 척족세력은 오로지 정권유지를 위하여 철저하게 정치적 보복으로 일관, 대원군세력과 척사파를 제거하였던 것이다. 관제의 개혁, 군제의 개편을 단행하였으나 이는 임오군란의 역사적 의의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들 자신들의 반성과 자각은 차치하고 정적을 숙청하기 위한 방편으로 일관하였던 정책이었다. 그러므로 國利民福과 富國強兵을 위한 정책은 기대할 수 없었고 自主性을 상실한 채 外勢에 의존하여 명맥을 유지하려고 하였다.

조선에서의 宗主權을 강화하고자 기회를 엿보던 중 임오군란으로 일본세력을 제치고 우위권을 확보한 것은 清國이었다. 청은 조선의 內政

干涉의 강화, 顧問官의 파견, 自國式의 官制改革, 軍隊駐屯의 합法화를 통하여 조선을 마치 從屬國化시켰다.

1882년 10월 「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을 체결하여 경제적 침투와 아울러 宗主國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하게 차지하였다. 즉 전문 8조로 되어있는 이 조약은 그 벽두에 “이번에 정한 바 수륙무역장정은 중국이 속방을 우대하는 뜻에서 작성한 것이므로 각국이 모두 均霑할 수 없다”라고 하여 清이 조선을 속방으로 하지만 제3국은 이를 不許한다는 것을 明文化시켰던 것이다.

청의 조선에 대한 내정간섭은 적극적이었다. 내정과 외교를 요리하기 위하여 외교고문으로 馬建常과 독일인 뮐렌도르프(P. G. von Möllendorf : 穆麟德)를 파견하였으며 관제개편에도 간여하여 외교와 통상관계를 관掌하는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外衙門)과 군무와 내정을 맡은 統理軍國事務衙門(內衙門)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군제도 개편하여 親軍營을 두어 前·後·左·右의 4營門이 관할하도록 하였다. 또한 청은 일본식 훈련을 받던 별기군대신 청의 교관에 의하여 1營 500명씩 2營의 군대 1,000명을 청국식 훈련을 받도록 하였다.

한편 청은 임오군란이 진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파견되었던 군대를 귀환시키지 않고 그대로 조선에 주둔시키면서 조선에서의 병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청군의 营務處 袁世凱는 왕궁호위라는 미명아래 군대를 배경으로 조선의 정치·경제·군사에 관한 온갖 간섭을 자행했으며 그는 朝鮮軍의 司令官과 같은 위치에 있었다.

이상과 같이 청은 조선의 정치·외교·군사를 간섭하면서 경제에도 손을 뻗쳐 海關, 海運業에도 진출하여 商權을 확대시켰다. 그리하여 청국상인의 진출도 두드러져 군란 1년 뒤인 1883년(고종 20) 仁川·釜山·元山 등 開港場의 상인수가 99명이던 것이 2년 뒤인 1884년에는 353명으로 3.5배가 증가하였으며 점포수도 그만큼 늘어났다. 더욱이 개항장뿐만 아니라 서울로의 청국상인의 침투는 가속화되어 1885년(고종 22)에는 서울거주 청국인 호수가 300戶나 되었고 同順泰, 慶

大號 등 청의 巨商들이 상주하였다.

그리하여 임오군란 후 1894년 清日戰爭전까지 조선의 무역은 日本을 제치고 清國이 완전히 독점하였다.

한편 청은 일본의 조선진출을 방해하기위하여 조선으로하여금 歐美列强들과 수호통상조약체결을 적극 권유하면서 중재에 나섰다. 이미 임오군란전 美國과의 '朝美修好通商條約' (1882년 5월)을 체결토록 하였으며 이어서 朝英, 朝獨(1883), 朝伊, 朝露(1884), 朝佛(1886)과의 通商條約을 체결토록 하였다.

임오군란은 개항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조선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일본에게는 큰 타격을 주었다. 일본은 '제물포조약', '조일수호조규속약' 등으로 군란으로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보상을 받아내고 군대의 주둔, 개항장의 확대, 일본공사와 영사는 물론 직원까지 조선내의 자유여행허용의 특권을 인정받는 등 외교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개항 후 조선에서 차지하고 있었던 정치적, 경제적 우위는 청국에게 넘겨주고 후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大陸進出에 야망을 가지고 있었던 일본은 조선에서의 세력열세에 자극받아 軍備擴張에게 박차를 가하게 하였고 새로운 對韓積極政策을 전개하게 되었다.

이미 일본은 1878년(고종 15) 參謀本部를 설치하고 對清作戰策을 연구하고 있었는데 임오군란이 일어난 후인 1882년 8월 경에는 清國을 假想敵國으로 하는 軍備擴張案을 마련하고 閣議의 承認을 요청하였던 것이다. 즉 일본육군은 이 난을 계기로 하여 대내적인 군비확장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추진시켰던 것이다. 또한 海軍확장도 급속히 추진되어 新建艦계획안이 동년 11월 각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로써 日本陸軍은 1884년에서 1894년사이 불과 10년만에 步兵 12旅團, 騎兵砲兵 각기 6聯隊, 工兵·輕重兵 각기 6大隊로 정비되었고 海軍은 1882년 당시 각종 軍艦 26隻이던 것이 1893년에는 32隻으로 확대되었던 것이다. 이와같은 군비확장은 1894년 清日戰爭에서 日本이 승리

하게 된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한편 日本은 안으로 군비확장에 열을 올림과 동시에 조선에서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시켜 나갔다. 1882년 12월 임오사죄사절로 파견되었던 朴泳孝, 金玉均 등에게 17萬환의 자금을 일본정부의 보증하에 供與한 것은 그 대표적인 실례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일본이 조선에서 親日黨을 형성하여 장차 일본세력의 침투를 용이하게 하기위한 布石의 일환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은 駐韓公使를 花房義質에서 竹添進一郎으로 교체하여 적극적인 對韓政策을 추진토록하였고 그 결과가 임오군란 2년후인 1884년 竹添公使의 조정하에 開化黨의 金玉均 등이 일으킨 甲申政變에서 노골적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이와같이 임오군란은 조선정국이 역전되는 가운데 청국의 군사적 간섭과 일본의 군사적 위압의 각축을 이루게 하였고 歐美列強의 势力마저 침투케하는 결과를 초래케 하였다. 이로써 조선은 점점 半植民地國家로 전락하게 되었고 自主權을 잃은 親清·親日로 갈라진 관료계층의 반목과 대립은 近代國家로의 志向에 장애물로 작용하였으며, 甲申政變·清日戰爭을 불러 일으키게도 하였다.